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75
----------	-------

발의연월일 : 2026. 4. 16.

발 의 자 : 한지아 · 박정하 · 조지연  
김성원 · 김재섭 · 고동진  
서일준 · 이상휘 · 박성훈  
배준영 · 정연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그 결정이 통지·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스톱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결정을 한 때”를 “결정을 한 이 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응급조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p> <p>① ~ ⑤ (생략)</p> <p>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p> <p>1. (생략)</p> <p>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u>결정을 한 때</u>(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가. ~ 다. (생략)</p>	<p>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결정을 한 이후</u>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u>그 결정을 고지받은 때</u>-----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